
일반대학원 평가 보고서



2018. 12.

광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목 차

I. 자체진단평가의 목적과 내용

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1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2
3. 자체평가 추진	3

II. 정량지표

1. 학사운영 및 관리	4
2. 교육 및 연구 역량	5
3.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6

III. 정성지표

1. 일반대학원의 목표 및 계획	9
2. 학사운영 및 관리	14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19
4. 학위수여체제	26
5. 교육 및 연구 역량	32
6.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34

I. 자체진단평가의 목적과 내용

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본 대학원에 대한 자체진단평가의 목적은 일반대학원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진단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발전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영역별 각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일반대학원의 전 분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자체진단평가를 통해 본 대학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무 중심 전문·연구인력’을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역량, 교육여건, 학사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자료로 활용함
-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향후 대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정책수립에 반영함
- 자체진단평가를 통해 대학원의 목표, 교육여건, 연구실적, 고급실무능력 등에 대한 대학원 구성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
-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본 대학원의 정체성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재점검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본 대학원에 대한 자체진단평가는 아래와 같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평가영역과 정량·정성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함
- 본 대학원의 자체진단평가는 1단계 정량지표(4개 평가영역, 18개 평가지표)와 2단계 정성지표(6개 평가영역, 3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평가영역	평가지표	
	1단계: 예비평가	2단계: 심층평가
목표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경영목표 • 대학원 발전 계획 • 자체평가 및 환류체제
학사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충원율 • 전일제 학생 비율 • 외국인 학생 비율 • 재학생 충원율 • 중도탈락학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발 • 입학전형 • 학생 유치 및 유지 • 학사운영 규정의 적절성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개편 방법 및 절차 • 수업계획서 배포 및 휴보강 관리 • 강의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 활용 • 대학원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생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위수여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 논문지도 학점화(y/n) • 졸업 자격조건으로 논문발표 의무화(y/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 기준 • 논문지도 방법 • 논문 공개발표 방법 및 실적 • 논문심사 절차 및 논문 심사위원 구성
교육 및 연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연구 실적 • 대학원생 논문발표 실적 • 졸업생 순수 취업률 • 재정지원 수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연구 참여 대학원생 현황 및 관련제도 • 졸업생 진로에 대한 대학원의 지원 • 전임교원 연구지원 규모 • 교육만족도
교육여건 및 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확보 • 행정직원 확보 • 전공조교 확보 • 대학원생 연구공간 규모 • 대학원 장학금 규모 • 대학원 재정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상담 및 진로 취업 지도체제 • 대학원생 인권보장 제도 •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 •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 기숙사 대학원생 입사정책 및 현황 • 대학원생 자치조직 구성현황 및 지원 • 강의실 확보와 배정 • 실험실습실 확보 및 운영
	4개 평가영역 / 18개 평가지표	6개 평가영역 / 33개 평가지표

3. 자체평가 추진

- 본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물류유통경영학과	교 수	이규훈	대학원원장
부위원장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허 명	대학원부원장
위 원	사회복지학과	교 수	이용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공주임
위 원	임상상담심리학과	교 수	김철민	보건복지교육대학부학장
위 원	정보보안학과	부교수	이윤호	취업·학생지원부처장

- 실무위원은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원	대학원	팀장	윤혜경
위 원	대학원	팀원	배은진
위 원	대학원	팀원	이형현
위 원	대학원	팀원	이선희

-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추진일정

일 정	구 분	주요 추진 내용	비 고
2018년 7월~9월	준비단계	자체평가추진 계획수립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확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수립 자체평가 기초자료 준비	자체평가위원회
2018년 10월~11월	시행 및 집필단계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 취합 평가항목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대학원교학팀 자체평가위원
2018년 12월	검토 및 보고단계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보완 자체평가보고서 감수 자체평가보고서 최종 수정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보고	대학원교학팀 자체평가위원
2019년 1월~2월	활용단계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정보공시 자체평가보고서 결과 활용 방안 검토	자체평가위원회

II. 정량지표

1. 학사운영 및 관리

1.1 신입생 충원율

○ 최근 2년간 신입생 충원율

구분	2016년 (입학자/입학정원)	2017년 (입학자/입학정원)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103.6%(114/110)	100.9%(111/110)
신입생 충원율(정원내외)	111.8%(123/110)	108.2%(119/110)

1.2 외국인 학생 비율

○ 최근 2년간 외국인 학생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외국인 학생 비율	6.8%	15.4%

1.3 재학생 충원율

○ 최근 2년간 재학생 충원율

구분	2016년 (학생정원/재학생정원)	2017년 (학생정원/재학생정원)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105.9%(233/220)	98.6%(217/220)
재학생 충원율(정원내외)	124.1%(273/220)	105.5%(232/220)

1.4 중도탈락학생 비율

○ 최근 2년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중도 탈락 학생 비율	8.8%	9.5%

2. 교육 및 연구 역량

2.1 전임교원 연구 실적

○ 전임교원의 논문 실적

학 년 도	전임 교원 수	논문 실적						교수당 논문 실적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전문	국제 전문
		국내 전문	국내 일반	계	국제 전문	국제 일반	계				
2016	86	51.57	20	71.57	4.39	2	6.39	0.91	0.07	0.59	0.05
2017	73	45.16	6.0	51.16	5.88	0.4	6.28	0.89	0.08	0.61	0.08

○ 전임교원의 저·역서 발간 실적

학년도	전임 교원수	저·역서 실적			교수당 저·역서 실적
		저서	역서	계	
2016	86	13.51	0	13.51	0.15
2017	73	8.53	0	8.53	0.11

○ 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천원)

학 년 도	전임 교원 수	과제 수			연구비지원 (교내/교외)	교수당 논문 실적		
		교내	교외	계		과제수	국내 연구비	교외연 구비
2016	86	59	7	66	125,163/261,900	1	1,455	3,045
2017	73	21	13	34	42,166/865,400	2	578	11,855

2.2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와 졸업자 대비 논문발표 비율

○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학년도	입학정원 (A)	학위취득자수 (B)	학위취득자 비율(%) $B/A \times 100$
2016	110	91	82.7
2017	110	111	100.9

○ 졸업자 대비 논문발표 비율

학년도	졸업자 수(A)	졸업자 중 논문 발표자 수(B)	논문발표 학생 비율(%) $B/A \times 100$
2016	91	91	100
2017	111	111	100

2.3 졸업생 취업 현황

○ 졸업생 취업 현황

학년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남	여	남	여	남	여	
2016	28	63	22	34	1	6	76.6%
2017	45	66	29	33	0	0	55.9%

3. 교육여건 및 지원 체계

3.1 전임교원 확보

○ 일반대학원 교수당 학생 수

학년도	재학생 수(A)	일반대학원 교수 수(B)	일반대학원 교수당 학생 수(B/A)
2016	273	86	3.17
2017	232	73	3.17

○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년도	총 개설 학점	점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학점	비율	강의 담당학점	비율
2016 ¹⁾	837	530.5	63.4%	160.5	19.2%
2017 ²⁾	615.5	458	74.4%	157.5	25.6%

3.2 행정직원 확보

○ 행정직원 및 전공 현황

학년도	재학생 수	전공 수	행정직원 수
2016	273	32	4
2017	232	30	4

3.3 전공조교 확보

○ 전공당 조교 수

학년도	학과 수(A)	대학원 조교 수(B)	대학원 조교 수(B/A)
2016	11	5	0.45
2017	11	6	0.55

3.4 대학원생 연구공간 규모

○ 대학원생 연구공간

학년도	재학생 수(A)	연구공간 면적(m ²)(B)	1인당 연구공간(m ²) (B/A)
2016	273	536.4	2.02
2017	232	594	2.37

1) 2016년 대학정보공시 강의담당 비율(%) 계산식 : (강의담당학점/총 개설 강의학점)×100
 2) 2017년 대학정보공시 강의담당 비율(%) 계산식 : (강의담당학점/강의담당학점 총계)×100

3.5 대학원생 장학금 규모

○ 대학원생 장학금 규모

(단위: 천원)

학년도	학기	등록금 총액 (A)	장학금 총액 (B)	비율 (B/A*100)
2016	1	920,348	365,537	40%
	2	773,195	259,711	34%
2017	1	809,376	298,635	37%
	2	569,693	261,004	46%

3.6 대학원 재정 규모

○ 대학원 운영 경비

(단위 : 천원)

학년도	재학생 수(A)	대학원 운영비 총액(B)	대학원생 1인당 운영비(B/A)
2016	273	1,393,479	5,104
2017	232	1,355,494	5,842

III. 정성지표

1. 일반대학원 목표 및 계획

1.1 대학원의 목표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1.1 대학원 목표	대학원은 교육이념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충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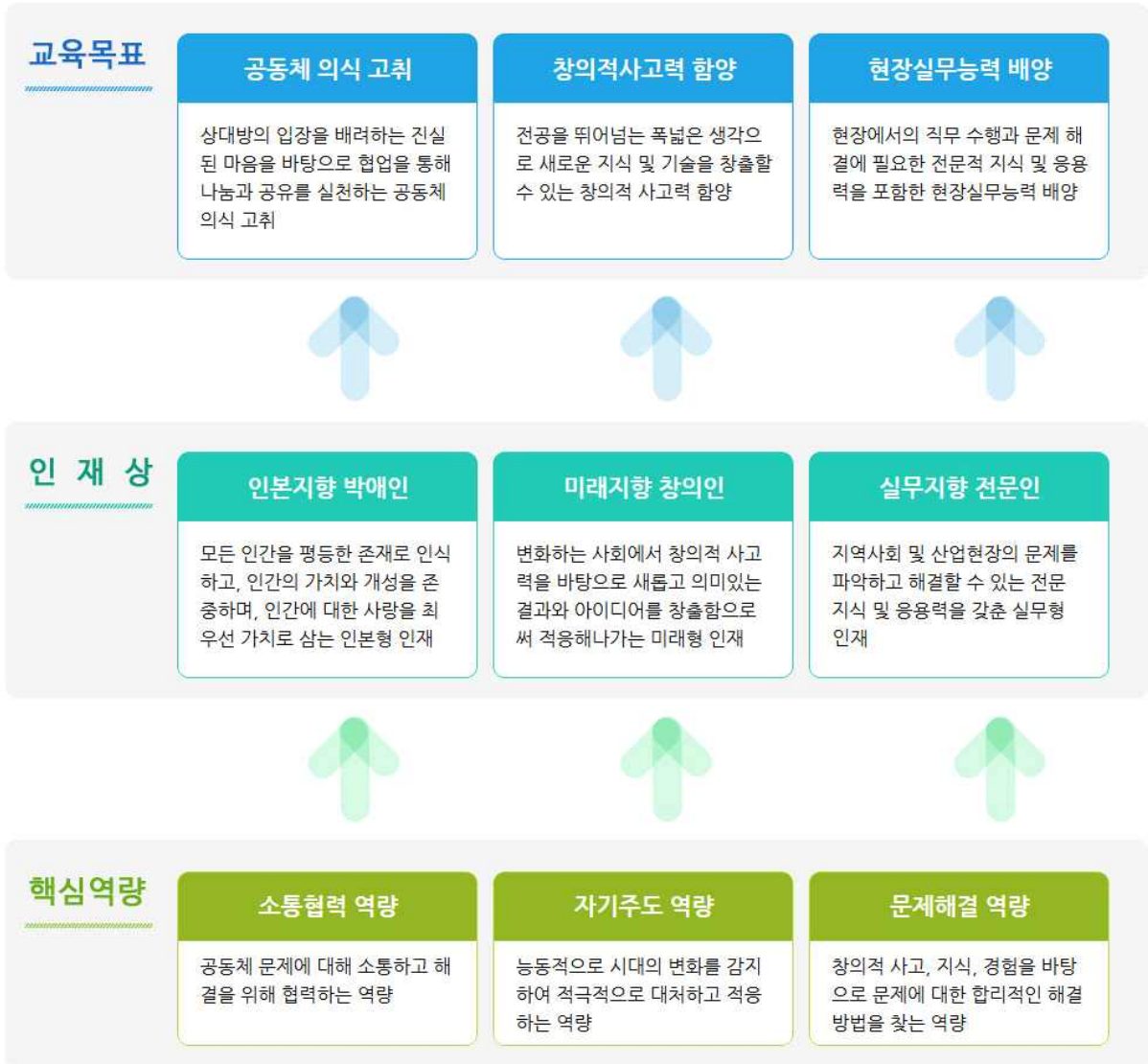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대학정보공시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계획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1.1.1 광주대학교의 사명과 핵심역량, 인재상,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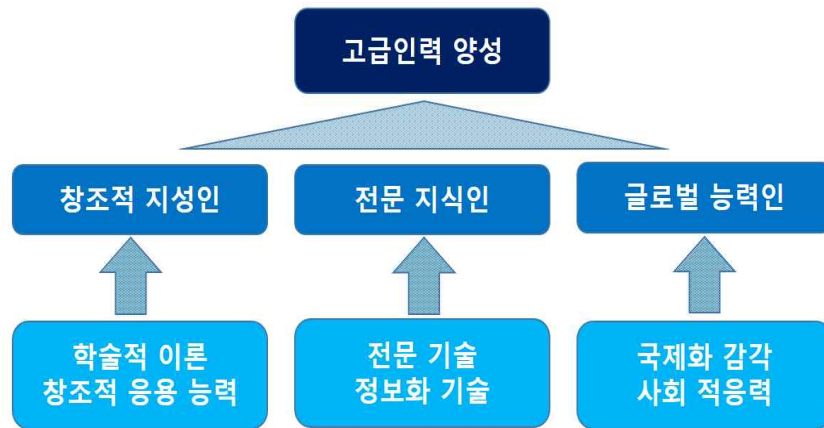
- 우리 대학은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이끄는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토대로 “민족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창조적 능력인 양성,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근면 성실한 인내인의 양성, 남과 나의 인권을 존중하고 조국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민주적 지성인의 양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
-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합리적 사고력 및 실용적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국가·세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공동체의식 고취, 창의적 사고력 함양, 현장실무능력 배양”의 3대 교육목표를 설정함



<그림 1> 광주대학교의 핵심역량, 인재상, 교육목표

1.1.2 대학원의 교육목표

- 학술적 이론의 탐구연구 및 실무적 지식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지성인을 양성하고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남을 배려하는 균형적인 전문 지식인을 육성하여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지도력을 갖춘 능력인을 육성하여 고급인력을 양성



<그림 2> 대학원 교육목표

1.2 대학원 발전 계획

본교 대학원 입학정원은 2017년 현재 석사과정 28개 학과 75명, 박사과정 13개 학과 35명으로 총 110명이며, 2018년 지난 30년간의 역사와 경험으로 호남권 최고의 대학원으로서의 발전과 학문영역별 특성화 실현을 위한 대학원 발전계획을 수립함

■ 자체진단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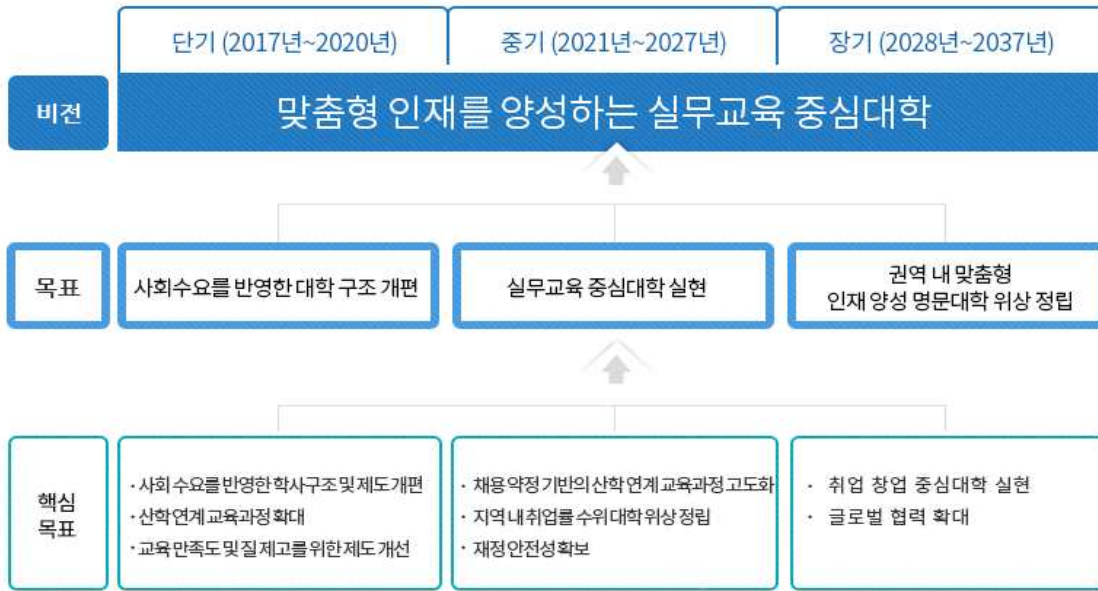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1.2 발전계획의 수립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미래사회 인재수요 및 대학원의 역량을 토대로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대학정보공시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계획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우리대학은 '17년 대학전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인 「GU Vision 2035」를 수립



<그림 3>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 대학의 발전 계획에 부합하도록 특성화, 지역화, 세계화를 통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



<그림 4> 대학원 발전 목표 및 방향

1.3 자체평가 및 환류체제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1.3 자체평가 및 환류체제	대학원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과 대학원에 반영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대학정보공시	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1.3.1 학과평가

- 본 대학원은 대학원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대외 이미지를 공고화할 뿐 아니라 대학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상반기 대학원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과평가를 실시함
- 신입생 충원률, 졸업생 수, 중도탈락률 등을 바탕으로 학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반대학원의 석사는 현재 28개 학과, 박사는 13개 학과가 개설되어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모집정원 석사 70명, 박사 35명)은 100% 이상 모집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공학계열 중 입학생이 없는 학과가 대다수로 구조개편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함
 - 최근 2년간 중도탈락 학생 비율은 2016년 8.8%, 2017년 9.5%로 증가추세이며 주로 미복학 학생임. 중도탈락학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1.3.2 환류체제

- 상반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들에게 피드백하여 전공별 신입생/편입생 홍보방안, 전공강의실과 세미나실 운영개선방안, 전공 교과목 편성과 운영(소수 수강인원 운영)방안, 보충과목 운영방안 등 내실화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함
- 격년별 학과 평가 실시 및 피드백 계획

- 2년 간격으로 학과 평가를 실시하여 전공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과별 신입생 규모를 배정하고 3년 이상 신입생이 모집되지 않거나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에 해당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 심의를 요청
- 대학원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보 공시
- 대학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원 운영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제고함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별 조교장학금과 재정 지원 규모를 차등화

2. 학사운영 및 관리

2.1 주요학사 관리 규정

학칙과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 입학과 졸업, 교과과정 및 수업평가, 학적변동 등 학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2.1 학사관리 규정	본 대학원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학사계획에 맞춰 진행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사관리규정(입학전형규정, 장학규정, 학위수여규정, 논문작성에 관한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대학원은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학사관리 규정[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등]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관련규정	주 요 내 용
입학전형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13조, 입학전형규정	대학원 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입학전형(연구과정생 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업연한	학칙 제16조	<p>제16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와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4.10.20, 2007.12.27></p> <p>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상,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p> <p>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학사과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는 제외),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4.10.20, 2007.12.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 6월 3. 박사과정 : 6월
교육과정	학칙제 35조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22조	<p><학칙></p> <p>제35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원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학칙(대학원)시행세칙></p> <p>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①<삭제 2013.9.24></p> <p>②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소속 교수들과 협의·편성하여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학적변동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	<p>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서 정한 휴학기간 경과 후 첫 번째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9.1> 3. 학업부실 등의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대학원에 재학 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구 분	관련규정	주 요 내 용
학점이수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24조(이수학점)	제24조(이수학점) ①학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4학점(연구과정 이수자는 12학점) 2. 박사과정 : 36학점
자격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

- 대학원의 주요 학사관리 운영 관련 규정(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입학전형규정, 장학규정, 학위수여규정, 학위논문작성에 관한규정,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등)을 잘 정비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2.2 입학전형

본 대학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입학전형이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2.2 입학전형	본 대학원은 신입생의 입학자격, 전형기준과 전형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발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입학전형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대학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13조(입학전형), 입학전형규정에 의거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면접/구술시험, 실기시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음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13조(입학전형) ①대학원에 입학할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방법

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지원학과(전공)는 신입학의 경우에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에 구애 받지 아니한다.

<입학전형규정>

제4조(전형방법과 전형요소 등) ①입학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음악학과와 사진학과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②서류심사에서의 전형요소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과 가산점, 구술시험, 실시고사(실기전형학과에 한함)로 한다. 전형요소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형 <개정 2011.12.20., 2015.8.26., 2017.8.22.>

가. 석사과정

전형요소		배점	비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50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1> 참조
우대 점수	공무원(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산업체 경력자 및 자영업자 등	10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4> 참조
면접·구술시험		40점	총 100점 만점

나. 박사과정

전형요소		배점	비고
대학 성적		15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1> 참조
대학원 성적		35점 만점으로 환산	
우대 점수	공무원(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산업체 경력자 및 자영업자 등	10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4> 참조
면접·구술시험		40점	총 100점 만점

2. 실기고사 실시 전공의 전형 및 과제(사진학과, 음악학과 석사과정)

<개정2013.9.24.,2017.8.22>

전형요소		배점	비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1> 참조
실기고사		실기 40점	실기20점 이하는 과락처리
우대 점수	공무원(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산업체 경력자 및 자영업자 등	10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4> 참조
면접·구술시험		40점	총 100점 만점

3. 실기시험 과제<개정 2013.9.24.>

학과(전공)	과정	전공별 실기고사 내용	준비물	비고	
사진학과	석사	준비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자신의 포트폴리오 - 8×10 프린트 10장 내외 ※ 흑백, 컬러 무관	사진학과실 062)670-2573	
음악학		피아노	▶ Beethoven Sonata 빠른 악장 1곡 ▶ Etude를 제외한 자유곡 1곡		음악학과실 062)670-2659
		성악	▶ 자유곡 1곡		
		합창지휘	▶ 지정곡 (원서접수시 배부)		
		관현악	▶ 자유곡 1곡		

- ③ <삭제 2015.8.26>
- ④ <삭제 2015.8.26>
- ⑤ 전형결과 복수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에 의한 환산점수가 높은 자
 2. <삭제 2015.8.26>
 3. <삭제 2015.8.26>
 4. 동일계 전공 출신자
 5. 경력 연수가 많은 자
 6. 직급이 높은 자

- 본 대학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11조(편입학)에 근거 각 학위과정의 여석이 있을 때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계 여부와 학기 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학칙과 입학전형 시행 내규에 의거 입시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입학전형과 입학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2.3 논문지도교수

본 대학원은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에 논문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 변경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교수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2.3 논문지도교수	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자격이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대학원은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지도교수 위촉), 제4조(지도교수의 임무), 제5조(지도학생의 제한), 제6조(지도교수의 변경)에 의거 체계적인 지도교수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지도교수 위촉) ①학생의 논문 또는 작품발표 지도를 위하여 제2학기 초에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교원을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

1. 학생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학생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기타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학과(전공)주임교수가 제1항의 지도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학생과 전공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24.>

제4조(지도교수의 임무) 지도교수는 학생의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작성 또는 작품발표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며 심사위원을 제청한다.<개정 2017.10.18.>

제5조(지도학생의 제한) 지도교수의 매 학기당 지도학생 수는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박사 1인, 석사 3인).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도교수의 변경) 기 위촉된 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울 경우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신·구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에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 대학원은 논문지도교수 관리는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3.1 교육과정 편성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3.1 교육과정 편성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발전하는 학계의 성과와 사회요구를 반영하고,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개편 방법과 절차를 갖춘	미흡(w)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실현을 위해 학과 및 전공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학과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충실하게 운영 중에 있음

(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 본 대학원은 대학원학칙 제1장에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며, 중장기발전계획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광주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치한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칭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대학원은 교육과정의 개설은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목표와의 연관성은 부족함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①<삭제 2013.9.24>
 ②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소속교수들과 협의·편성하여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의 편성

- 대학원의 교육과정의 편성 규정, 절차 및 기준심의가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음

<학칙>

제35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원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①<삭제 2013.9.24>

②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소속교수들과 협의·편성하여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칙 및 학칙(대학원)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보장
-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심의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

3.2 교육과정 개편방법 및 절차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3.2 교육과정 개편방법 및 절차	대학원은 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를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첨부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본 대학원은 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본 대학원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제78조(설치 및 구성) ① 본교에 설치·운영하는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대학원 부원장,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주임교수, 보건상담정책대학원 주임교수 중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단,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3.1, 2007.9.10., 2010.6.9.,2013.9.25>

③ <삭제 2010.6.9>

④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내 학과(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 관련 규정 및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음

3.3 수업계획서 배포 및 휴·보강 관리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3.3 강의계획서 배포 및 휴·보강 관리	대학원은 수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전산에 휴·보강관리를 통해 충실한 수업을 운영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현장확인	강의계획서 및 휴·보강계획서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3.1 수업계획서(강의계획서) 온-오프라인 배포

-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당해학기 개강 전에 대학원 온라인행정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수강생은 온라인행정을 통해 강의계획서를 열람하고 있음
- 개강 전 해당 기한까지 온라인행정 시스템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담당교수들에게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교수의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 입력하도록 권고함
- 강의계획서에는 강의교재, 한 학기동안 강의시간계획/강의내용, 평가방법, 강의개요와 강의목표, 참고문헌 등을 세밀하게 기술하도록 함
- 본 대학교에서는 교수업적평가의 교육부분에 강의계획서 입력에 대해 교과목 당 교육업적점수 1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 대학원 담당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업적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학부와 통합 운영방안을 향후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3.3.2 휴강 및 보강 관리

- 본 대학원에서는 개설 교과목의 휴강과 보강에 대해 학과 자율 또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맡겨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 교과목 담당교수의 개인적 사정(출장)에 의한 휴강, 공휴일 휴강에 대해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대학교에서는 학부 개설교과목의 휴강, 보강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출장부 명서와 보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3.4 강의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활용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3.4 강의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 활용	대학원은 수강생들에게 강의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강의평가 그 결과를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미흡(w)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현장 확인	자율적인 평가와 피드백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4.1 강의평가 실시 현황

- 본 대학교에서는 학기 중강 1주일 전부터 성적 열람 시까지 대학의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를 완료해야만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학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학과(전공)의 담당교수와 대학원생간 자율적인 평가와 피드백에 의존하고 있음
- 학부의 강의평가시스템과 본 대학원의 강의평가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3.4.2 강의평가 결과 활용

- 본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평가는 중간과 기말로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수업개선보고서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준비와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강의평가 결과 우수강의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점수 하위 10% 교원은 교수법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본 대학원에서는 학부와 같은 강의평가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대학원생들간 SNS, 대학원원우회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학부와 같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강의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대학원의 강의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3.5 교수학습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3.5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수 방법을 개발·적용하여 교수·학습 성과를 제고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교수학습연구원 운영 규정
현장확인	교수법 프로그램 내역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5.1 대학원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본 대학교에서는 2008년 교수학습연구원을 설립하여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의 질적 개선과 전문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교수·학습전담교수 및 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분한 전문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본 대학원에서 대학원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원 관련한 연구계획서 작성, 자료 분석을 통한 고급통계 등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음
-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규정에 근거하여 교내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연구원”를 설립·운영 하고 있음

제1조(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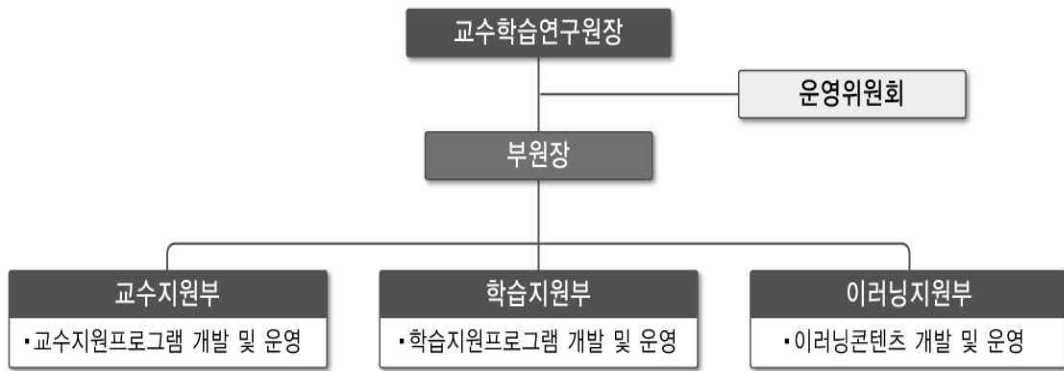
이 규정은 학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교수학습연구원(CTL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 무)

연구원은 교수·학습 관련 이론과 방법 연구, 교수·학습 지원 및 e-Learning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광주대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교육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② 학습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③ e-Learning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④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개발 관련업무

- 교수학습센터(CTL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의 조직은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e-러닝지원부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그림 5> 교수학습연구원의 구성

- 교수학습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수·학습 전담교수와 전문 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과 부원장, 직원 4명을 확보하고 있음
-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교수지원, 학습지원, 온라인강의·교육매체지원 등 교육 인프라를 확대, 개선하고 있음
- 교수학습연구원 설립과 관련 규정 및 조직, 예산집행 등 교수법, 학습법 프로그램이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학원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에 부합하는 적합한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학위수여체제

4.1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 기준

본 대학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4.1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기준	대학원은 목표한 교육적 성과의 질 관리를 위해 재학생의 졸업시험 절차와 통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현장확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운영현황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대학원은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격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자격시험의 시기, 출제위원, 응시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관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각각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학위논문제출 등의 자격, 절차, 시기,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9. 24.>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 외국어시험 : 석사·박사과정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14.1.15.>
2. 종합시험

가. 각 학위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석사과정은 24학점 취득 및 취득예정자, 박사과정은 36학점 취득 및 취득예정자

나. 기 취득한 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B(3.0)이상인 자

제3조(응시절차)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 주임교수와 교학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일정) ①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할 수 있다.

②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제위원 등 수당지급)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 채점, 감독위원(이하 “출제위원 등”이라 한다)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8.8>

②출제위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8.8>

제6조(외국어시험) ①외국어시험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중에서 응시자가 택일한 외국어의 독해능력의 유무를 평가 한다. <개정 2013.9.24.>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재학중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한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공인 외국어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690점, 토플 PBT:474

점, CBT:210점, IBT:84점, 중국어는 HSK(구6급, 신4급), 일어는 JLPT2급, 한국어는 TOPIK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한 증명서를 제출한자 <개정 2013.09. 24>

3.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 학위 소지자등 대학원위원회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자

제7조(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은 각 학위과정에서 이수 또는 이수 중 인 과목 중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과목은 학과(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한 후 정한다.<개정 2013.9.24., 2014.10.23>

제8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대한 성적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9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재학연한 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5.9.>

제10조(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졸업 자격시험) 재학연한 내에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생은 이미 합격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인정한다. <신설 2018.5.9>

○ 졸업 자격시험(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대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졸업 자격시험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4.2 학위논문청구

본 대학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관리하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4.2 학위청구심사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대학원은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제29조(석·박사학위의 수여), 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거 학위청구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대학원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거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학위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심사 과정을 통해 논문내용의 적격성과 연구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음
-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중 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 2인을 외부인사를 초빙하도록 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제29조(석·박사학위의 수여) ①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및 보건상담정책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학과(전공)별로 정한 논문대체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추가로 이수한 자에게 석사 학위를, 조사연구보고서 형식의 연구논문을 박사학위청구논문에 대체하여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6.9.1>

제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학위논문제출 등의 자격, 절차, 시기,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9. 24.>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9조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0

조 학위논문 제출 등의 자격, 절차, 시기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석사학위신청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등의 요건) 석·박사학위신청을 위하여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는 24학점 이상, 박사학위는 3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인은 TOPIK 4급 자격증(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제출(테솔학과 제외)<개정 2012.10.25.,2016.9.1>
<전문개정 2012.10.25.>

제3조(학위신청논문연구 및 작품발표 계획서 제출)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작성 및 작품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와 박사는 제3차 학기 초, 석·박사통합과정은 제7차 학기 초에 학위신청논문연구 및 작품발표 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4., 2014.1.15>

제4조(석·박사학위신청논문 작성 제출 및 작품 발표 절차) ①논문 작성은 학위논문작성세칙에 따라 작성하되, 국한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영문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학위신청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작품발표는 세칙에 의해 시행한다.

②석·박사학위신청논문 및 작품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4>

<개정 2014.1.15>

1.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연구계획서 (3학차)
2.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4학차)
3. (석,박사)학위신청논문제출 지도교수추천서(4학차)
4. 심사용 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 및 작품 (4학차)
5. (석,박사)학위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서식 3> (4학차)

<전문개정 2013.9.24., 2014.1.15>

제5조(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의 시기 및 기한) ①석·박사학위신청논문의 제출과 석·박사학위신청 작품발표의 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②제1항의 논문제출·작품발표는 석·박사과정 수료 후 석사는 3년, 박사는 5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①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구술시험 포함)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석사과정) 또는 5인(박사과정) 이상의 심사위원이 행하되, 심사의 진행은 심사위원 중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고, 심사위원 중 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 2인을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②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고,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자격) 석·박사학위신청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위원으로 제청·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본교의 부교수로 한다.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제8조(심사기간 및 결과보고) 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개시 후 심사위원장은 6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의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11., 2013.9.24>

1. (석,박사)학위 신청논문 지도확인서
2. (석,박사)학위 신청논문 심사 결과표
3. 논문 (석사 4부, 박사 4부), 심사위원의 날인이 되어있는 논문 한글 파일 및 작품. <개정 2013.9.24., 2015.8.26., 2017.10.18>

제9조(심사료의 지급) 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재심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사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심사신청자는 논문 또는 작품발표를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학위수여의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을 제출하거나 작품발표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석·박사학위 수여) 제11조에서 규정한 석·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된 자는 학위기로서 해당 석·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세부전공 표기가 필요한자는 본인, 지도교수,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신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세부전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9.24>

제13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별지 서식 1 또는 별지 서식 2의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
4. 명예박사학위는 본교의 정규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사항) 학위신청논문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절차와 방법, 심사위원 선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5. 교육 및 연구역량

5.1 교육 역량

본 대학원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보조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다양한 국책사업, 특성화 사업, 연구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5.1 교육 역량	대학원생의 연구윤리교육을 통해 연구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사과정의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를 경우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및 제25조

<p>제7조(연구과정생) 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p> <p>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p> <p>③ 연구과정생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2013.9.24></p> <p>④ <삭제 2011.12.20></p> <p>⑤ 연구과정생은 대학원장이 고시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5조(보충과목의 취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이수과목 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p> <p>1. 각 학위과정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른 자</p> <p>2. 기타 입학전형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p> <p>② 보충과목은 대학원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p> <p>③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4></p>

- 학과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가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논문 작성자를 대상으로 논문표절 예방을 위한 유사도검사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 석·박사학위논문 졸업대상자에게 대학교에 설치된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사를 실시하여 학위수여 여부 심의의 필수 조건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2018년도부터 대학원생들에게 온라인교육(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제출하고 있음

5.2 연구 역량

단과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해 전임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임교원이 연구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5.2 연구 역량	전임교원의 연구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구년제도, 업적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구업적을 강화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전임교원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규정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1.23>

1. 전임교원의 연구진흥지원
2. 전임교원의 연구·학술 활동지원
3. 부설연구소의 자체 연구 및 학술행사

6.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6.1 교육 여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과 대학원생 연구 공간,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행정직원도 확보하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6.1 교육여건	대학원은 교수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원생 연구 공간, 장학금 지급, 행정 직원 확보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대학정보공시	교수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원생 연구 공간, 장학금 수혜현황, 행정직원현황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2017년 기준 본 대학원은 재학생 232명, 전임교원 73명으로 교수당 학생 수는 3.17명이고,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74.4%이며, 대학원생 1인당 연구 공간은 2.37㎡, 장학금지급비율은 41.5%, 행정직원 4명으로 교육 여건은 양호한 편임

6.2 지원체계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상담 및 진로취업 지도, 인권보장제도, 행정직원 4명 배치, 경비요원의 24시간 교내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편의 제공, 기숙사 입사 가능, 학과마다 대학원생 자치조직으로 원우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6.2 지원 체계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상담 및 진로취업 지도, 인권 보장제도, 복지시설, 자치회 조직, 강의실 및 실험실 습실을 배정하고 운영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현장확인	대학생활상담센터 및 취업진로지원센터 시설 및 인력배치 대학원생의 권리장전 복지시설 구비 현황 및 운영실적 대학원생 자치활동 운영 실적 자료 대학원 수업을 위한 강의실 확보 및 배정 현황 대학원 실험실습실 목록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학생 생활상담 지원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1대 1 개인 상담 지원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등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리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 취업진로지원 센터에서 취업교육프로그램, 취업상담, 직업분석, 재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상담 및 진로취업 지도 인력 배치 실적

구분	학과 지도교수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생활상담센터
인원	73	4	2

-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교수, 대학원생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
- 대학원생의 인권 및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규정 및 제도 등의 제정이 요구됨
- 광주대학교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2018년 5월 10일에 제정하여 공지하였으며 대학원생 인권보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서관, 기숙사, 식당, 매점, 카페, 휴게실, 체력단련실, 서점, 은행, 우체국 등의 다양한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학부 학생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대학원 원우회실 확보 및 제공

- 대학생 안전메뉴얼 제공(대학 홈페이지에 탑재)
 - 행사 및 MT 진행시 행정 절차 안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고 발생 시 행동 강령
 -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체계도
 - 응급처치 가이드

- 경비 요원의 24시간 교내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응급 처치, 건강 상담 및 진료 제공

- 성희롱고충상담 지원
 - 교내 성차별을 근절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 광주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성 평등한 교육환경과 대학문화 확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 지원
 -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편의 제공

- 기숙사 입사정책 및 현황
 - 기숙사에 대학원생 몫으로 할당되어 있는 경우는 없으나 기숙사 사용을 원할 경우 입사 가능함
 - 대학원생 기숙사 입주 현황

학년도	전체수용 가능인원	수용 대학원생수	기숙사 수용률	기숙사 지원자 수	입사경쟁률
2016	1,952	13	0.04	13	100%
2017	1,952	2	0.008	2	100%

- 대학원 자치조직은 학과 단위로 원우회를 구성하여 학술 동아리, 대학생과 연계한 멘토-멘티 동아리 등 학과 특성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

- 대학원 수업을 위한 강의실 확보 및 활용
 - 대학원 수업은 전일제로 진행 가능하지만 대학원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로 야간이 이

루어지는 관계로 학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의 강의실 10개를 편성하여 대학원 전용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고 학과별로 학부강의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강의실 활용 현황 및 전용공간

학년도	강의실 수	총 개설강의 학점(시간)	대학원생 전용공간 수용인원		
			수용인원	면적(m ²)	1인당 면적
2016	10	219	165	536.4	4.79
2017	10	185.5	165	594.0	5.08

- 본 대학원은 전공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현장 적응도를 높이는 실험실습실을 확보 및 운영하고 있음
-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과는 실습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규정 및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립이 필요함